

## 출원 자료서를 이용한 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 선언서 (37 CFR 1.76)

DECLARATION (37 CFR 1.63) FOR UTILITY OR DESIGN APPLICATION US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37 CFR 1.76)

발명의 명칭 Title of Invention	
------------------------------	--

아래에 기명된 발명자로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As the below named inventor, I hereby declare that:

동 선언서

제출처: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 첨부된 출원, 또는  
The attached application, or
- 미국 출원 또는 PCT 국제 출원 번호 \_\_\_\_\_ 및 출원 일자 \_\_\_\_\_  
United States application or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_\_\_\_\_ filed on \_\_\_\_\_.

상기 기재된 출원은 본인이 작성하였거나, 본인의 허락하에 본인 작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본인은 본인이 단독 또는 공동 발명자와 함께 출원서에 주장된 발명사항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본인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 동 선언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18 U.S.C. 1001에 의거, 벌금형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 주의:

## WARNING:

청원인/출원인은 특히 출원 문서에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번호, 은행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 (지불 용도로 제출되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 승인 양식 PTO-2038 제외)와 같은 개인정보는 미국 특허청이 청원 또는 출원을 지원할 때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되는 문서에 포함되는 경우, 청원인/출원인은 미국 특허청에 이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서의 개인정보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공개 (37 CFR 1.213(a))에 따라 출원서에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허권 발급 후에는 일반인이 특허 출원에 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청원인/출원인에게 알려 드립니다. 더욱이 공개된 출원 또는 발급된 특허권에서 참조되는 경우에는 포기한 출원의 기록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7 CFR 1.14 참조). 지불 용도로 제출되는 수표 및 신용카드 승인 양식 PTO-2038은 출원 파일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Petitioner/applicant is cautioned to avoid submitting personal information in documents filed in a patent application that may contribute to identity thef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bank account numbers, or credit card numbers (other than a check or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 PTO-2038 submitted for payment purposes) is never required by the USPTO to support a petition or an application. If this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documents submitted to the USPTO, petitioners/applicants should consider redacting such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ocuments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SPTO. Petitioner/applicant is advised that the record of a patent applic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after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unless a non-publication request in compliance with 37 CFR 1.213(a) is made in the application) or issuance of a patent. Furthermore, the record from an abandoned application may also be available to the public if the application is referenced in a published application or an issued patent (see 37 CFR 1.14). Checks and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s PTO-2038 submitted for payment purposes are not retained in the application file and therefore are not publicly available.

발명자의 법적 성명

LEGAL NAME OF INVENTOR

발명자: \_\_\_\_\_ 일자 (선택사항): \_\_\_\_\_  
Inventor: \_\_\_\_\_ Date (Optional): \_\_\_\_\_

서명: \_\_\_\_\_  
Signature: \_\_\_\_\_

주의: 전체 발명에 대한 열거사항을 포함한 출원 자료서 (PTO/AIA/14 또는 상응하는 문서)를 이 양식에 반드시 첨부하거나 기존에 이미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명자가 복수일 경우 PTO/AIA/01 양식을 추가 발명자 1인당 하나씩 작성하십시오.

Note: An application data sheet (PTO/AIA/14 or equivalent), including naming the entire inventive entity, must accompany this form or must have been previously filed. Use an additional PTO/AIA/01 form for each additional inventor.

A Federal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nor shall a person be subject to a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an information collec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unless the information collection ha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The OMB Control Number for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0651-0032. Public burden for this form is estimated to average 1 minute per response, including the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searching existing data sources, gathering and maintaining the data needed, and completing and reviewing the information collection.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or email [InformationCollection@uspto.gov](mailto:InformationCollection@uspto.gov). **DO NOT SEND FEES OR COMPLETED FORMS TO THIS ADDRESS.** If filing this completed form by mail, send to: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If you need assistance in completing the form, call 1-800-PTO-9199 and select option 2.

## 프라이버시법

1974년 프라이버시법(P.L. 93-579)은 특히 출원이나 특허와 관련된 첨부 양식을 제출하는 것에 관련되어 특정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35 U.S.C. 2 권한에 따라 이 기록에 나오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름, 국적, 거주지, 우편 주소 그리고 발명가와 특허를 바라거나 특허가 허락된 발명품과 연관된 출원인/보유자의 활동과 관련된 발명가의 법률 대리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포함해 모든 출원인과 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USPTO 기록 체계가 사용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해당 프라이버시법 기록 체계 통지는 COMMERCE/PAT-TM-7 특허 출원 파일(Patent Application Files)로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78 FR 19243(2013년 3월 29일)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3-03-29/pdf/2013-07341.pdf>

이 기록 내 정보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에는 다음에 나오는 이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1) 기록 체계가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 집행관에,
- 2) 요청 시 연방, 주, 지방 혹은 국제기관에,
- 3) 계약을 이행하려면 정보가 필요한 USPTO 도급업자에게,
- 4)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기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법부에,
- 5) 기록에 관련된 개인이 기록의 주제와 관련된 도움을 국회의원에게 요청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 6) 합의 협상 과정에 상대 변호사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증거 제시 과정에서 법원, 판정관 혹은 행정 심의회에,
- 7) 중앙조달기관(GSA) 규정과 다른 관련(즉, GSA 혹은 상업) 명령에 따라 그런 공개가 개인에 대한 결정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44 U.S.C. 2904 및 2906 권한 아래 GSA가 한 기록 검사 과정에서 GSA 행정관 혹은 그 지명자에게,
- 8) 국가안보심사(35 U.S.C. 181)와 원자력법(42 U.S.C. 2108(c))에 따른 심사의 목적으로 다른 연방 정부 기관에,
- 9) 인사 조사 목적으로 인사관리처(OPM)에,
- 10) 법적 조율과 승인 목적으로 예산관리국(OMB)에

이 양식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USPTO가 귀하가 제출하신 것을 처리 그리고/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종결, 출원 취하 그리고/또는 특허 만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